『2026년 경남진주강소특구 이노테크 기업육성 사업』 통합공고

경남진주강소연구개발특구(이하 '경남진주강소특구')는 특구기업의 기술애로 해소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해 특화산업을 육성하고자 「2026년 경남진주강소특구 이노테크 기업육성 사업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,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6년 4월 17일

경남진주강소특구지원센터장

1 사업개요

□ 사 업 명: 『2026년 경남진주강소특구 이노테크 기업육성 사업』

□ 사업목적: 특화(친환경 미래비행체 부품·소재) 및 연계 분야 기업에 대한 수요 맞춤형 기술사업화 지원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 및 매출 증대 촉진

□ 사업내용: 진주시 소재 기업의 수요에 기반한 원스톱 기술사업화(기술고도화, 시작(제)품 제작, 시험분석, 연구개발 등) 지원

□ 사업예산: 총 950백만원 **(사업별 세부내용 참고)**

□ 사업기간: 2026. 3. 10. ~ 2027. 3. 9. (**지원사업별 사업기간은 세부내용 참고)**

※ 사업추진 현황에 따라 이후 변동될 수 있음

□ 지원방식: 기술핵심기관 직접 수행(**바우처 방식***)

* 바우처방식: 선정기업의 사업비 사용과 관련하여 기술핵심기관에서 재료구매 및 시제품 제작 등을 제공(납품)하는 기업/기관 등으로 직접 지급 (사업비가 선정기업에 직접 교부되지 않음)

□ 지원대상: 특화(친환경 미래비행체 부품·소재) 및 연계 분야 기업단독 혹은 경상국립대 및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활용하여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

공통 지원 조건 (3가지 중 1가지 이상 해당하는 기업)
① 경남진주강소특구 내 특화 분야(친환경 미래비행체 부품·소재) 기업 ② 진주시 소재 기업 중 특화 분야 및 연계 분야 기업(기계, 조선, 자동차, IT, RT, BT, NT 등) ③ 진주 관외 기업의 경우 지원기간 내 강소특구 내 사업장 이전(설립) 필수

□ 지원제외 대상

○ 신청자격 검토사항 및 사전지원제외 대상: 「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」의 제19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

□ 민간부담금: 없음

□ 기술료징수: 해당없음

□ 관련법령 및 규정

근거법령	○ 국가연구개발혁신법,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* *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,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,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,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○ 과학기술기본법,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, 시행규칙 ○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,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○ 국가연구개발 시설.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
관련규정	○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○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○ 경남진주강소특구 특화개별사업 관리치침 소급 적용

※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기 근거를 적용함

2 공고대상 사업

사업	주요내용		지원규모	
			분야별 금액	총액
Ⅰ 테크코어	기술성장 지원	· 기업의 제품 기능, 성능 등의 향상을 위해 기술핵심기관 및 공공연구기관 보유기술 이전 기반 특화분야 **딥테크기술 개선 지원** · 지역 산업의 특화분야(친환경 미래비행체 부품·소재)로 **전환·확장**에 필요한 기술 개발 지원 · 우주 및 미래비행체 연관 기술성장을 위한 시험인증, 시제품 지원 등	350백만원 (7개사 내외)	800 백만원
	사업화촉진 지원	· 경남진주강소특구 내 공공연구기관 **보유기술의 사업화**를 추진하는 특구 내 기업, 연구소기업 또는 연구소기업 설립 및 출자를 추진 중인 기업 지원 · 대상기업의 매출신장을 위한 **기개발·휴면 기술의 사업화**를 위한 지원 · 연구소기업 설립 후 연구소기업이 보유한 기술개발 및 고도화를 위한 후속 지원	250백만원 (5개사 내외)	
	연계협력 지원	· **대기업의 기술수요를 발굴하여** 대기업/중견기업/공동연구개발기관 등과 연계하여 딥테크기술 확보 지원 · **해외 기업/기관/클러스터 등과 연계한** 특화분야 딥테크기술 확보 지원 · **첨단산업 연계** 핵심기술 또는 시작(제)품 개발이 가능한 기업 지원	200백만원 (2개사 내외)	
Ⅱ 테크스타트	혁신역량 초기기업 지원	· **핵심기술 확보를 희망하는 초기기업의** 연구·개발 역량 강화 및 사업화 모델 탐색을 지원하여 기업 성장기반을 조기 확보하도록 지원 · 보유 및 이전 기술의 시연에 필요한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고 사업화, TRL 제고 등 성장잠재력 확보에 필요한 전문가 컨설팅 지원	100백만원 (4개사 내외)	100 백만원

사업	주요내용		지원규모	
			분야별 금액	총액
Ⅲ 테크그로우	해외인증 컨설팅 지원	· 기업의 해외진출 경쟁력 및 산업생태계 입지강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- AS9100 및 KS Q 9100 인증(신규/갱신/사후) 취득을 위한 컨설팅	사업별 상이 (5개사 내외)	50 백만원
	기술·경영 컨설팅 지원	· 특화 및 연계분야 기업의 애로사항(설계, 시험, 평가, 해석, 공정개선 등) 해소 기술적 문제 개선을 위한 컨설팅 지원 · IPO 전략, 중장기 경영전략, 글로벌 진출 등 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경영분야 관련 애로사항 해선을 위한 컨설팅 지원		
	글로벌 마케팅 지원	· 해외 시장 진출국 및 실증화 타겟이 명확한 기업 대상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기술사업화 진원 - 수출용 제품 현지화(제품 디자인 포장라벨 등), 국내·외 글로벌전시회 참가를 위한 샘플(시제품) 제작, 제품 홍보영상(외국어 등) 지원		

위 내용은 세부사업별 지원내용의 요약정보이며, 신청관련 상세 내용은 세부사업 안내를 확인하여 내용에 맞게 신청하기 바랍니다.

□ 사업추진 총괄표

사업	주요사업 내용	추진일정										
		4월	5월	6월	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	1월	2월
Ⅰ 테크코어	기술성장 지원	공고	모집 및 선정	사업수행							결과 보고	
	사업화촉진 지원											
	연계협력 지원											
Ⅱ 테크스타트	혁신역량 초기기업 지원	공고	모집 및 선정	사업수행							결과 보고	
Ⅲ 테크그로우	해외인증 컨설팅 지원		공고	모집 및 선정	사업수행					결과 보고		
	기술·경영 컨설팅 지원		공고	모집 및 선정	사업수행					결과 보고		
	글로벌 마케팅 지원		공고, 모집 및 선정	사업수행 및 결과보고			공고, 모집 및 선정	사업수행 및 결과보고				

※ 사업기간 및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, 세부사업 공고 시행 예정.

3 신청방법 및 문의처

□ 연구개발계획서 및 관련 양식 교부

○ 사업공고: 경남진주강소특구지원센터 홈페이지(https://innopolisjinju.com)
진주시 홈페이지(https://www.jinju.go.kr)
경상국립대학교 홈페이지(https://www.gnu.ac.kr)

○ 접수방법: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(PDF) 형태로 E-mail 제출

○ 접 수 처: 경남진주강소특구지원센터 특화지원팀(innopolis@gnu.ac.kr)

□ 문의처

○ 담당부서: 경남진주강소특구지원센터 특화지원팀

구분	연락처	E-mail	주소
테크코어	055-772-4846	innopolis@gnu.ac.kr	(우)52828 진주시 진주대로 501 경상국립대학교 항공우주산학협력관(407동 204호) 경남진주강소특구지원센터
테크스타트 테크그로우	055-772-4851		

□ 유의사항

○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,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

○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

○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
○ 사업선정 시 주요 성과지표, 세부예산 및 연구개발계획 관련 세부내용 등은 기술핵심기관(경상국립대학교)과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

○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되어 중복성이 인정된 경우에는 당해 협약해약및 추후 정부 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

○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 되거나, 참여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기재.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, 정부 사업 참여 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

○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·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, 지침.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업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에게 있음

4 기타사항

□ 강소특구 소재 기업 확인방법

○ 토지이음(https://www.eum.go.kr) 내 주소 검색 후 범례(연구개발특구) 확인

1. 토지이음 접속 후 사업장 주소 입력하여 열람

2. 검색 결과에서 범례(연구개발특구) 유무 확인

소재지	경상남도 진주시 가좌동 900번지		
지목	학교용지	면적	278,987 ㎡
개별공시지가(㎡당)	598,000원 (2025/01) 연도별보기 REB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		
지역지구등 지정여부	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역 · 지구등	보전녹지지역 , 자연녹지지역 , 대학(2020-06-25)(대학교06)(저촉) , 대학(대학교06)(저촉)	
	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 · 지구등	가축사육제한구역(모든축종 제한)<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>, 상대보호구역(가좌초등학교)<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>, 상대보호구역(가좌초등학교병설유치원)<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>, 상대보호구역(경상국립대학교 가좌캠퍼스)<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>, 교육·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(R&D융합지구(경상대))<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특별법>, 연구개발특구(강소연구개발특구 경상대)<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특별법>, 하천구역(가좌천)<하천법>	
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」 제9조 제4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			

□ 경남진주강소연구개발특구 특화분야 기업 분류코드

강소특구	특화분야		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(KSIC 매칭)
	대분류	중분류	
경남 진주	항공우주 부품소재	항공우주부품	금속 주조업(C243) / 구조용 금속제품, 탱크 및 증기발생기 제조업(C251) /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(C252) / 기타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(C259) / 반도체 제조업(C261) / 컴퓨터 및 주변 장치 제조업(C263) / 통신 및 방송장비 제조업(C264) / 영상 및 음향기기 제조업(C265) /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 제조업(C266) / 의료용 기기 제조업(C271) / 측정, 시험, 항해, 제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(C272) / 사진장비 및 광학 기기 제조업(C273) / 전동기, 발전기 및 전기 변환・공급・제어 장치 제조업(C281) / 일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(C282) /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(C283) / 전구 및 조명장치 제조업(C284) / 가정용 기기 제조업(C285) /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(C289) /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(C291) /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(C292) /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(C301) /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(C302) /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(C303) / 자동차 재제조 부품 제조업(C304) / 선박 및 보트 건조업(C311) / 철도장비 제조업(C312) / 항공기, 우주선 및 부품 제조업(C313) / 그 외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(C319)
		항공우주소재	방적 및 가공사 제조업(C131) / 직물 직조 및 직물제품 제조업(C132) / 편조 원단 제조업(133) / 섬유제품 염색,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(C134) /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(C139) /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(C202) / 비료, 농약 및 살균·살충제 제조업(C203) /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(C204) / 화학섬유 제조업(C205) / 기초 의약 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(C211) / 고무제품 제조업(C221) /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(C222) /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업(C231) / 내화,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(C232) / 시멘트, 석회, 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업(C233) /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(C239) / 1차 철강 제조업(C241) / 1차 비철금속 제조업(C242)
		항공우주 기타	기타 식품 제조업(C107) / 봉제의복 제조업(C141) / 편조의복 제조업(C143) / 신발 및 신발 부분품 제조업(C152) / 인쇄 및 인쇄관련 산업(C181) / 기록매체 복제업(C182) /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(C340) / 보관 및 창고업(G521) /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(G529) /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(J582) / 컴퓨터 프로그래밍,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(J620) / 자료 처리, 호스팅,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(J631) / 기타 정보 서비스업(J639 /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(M701) / 기타 전문 서비스업(M716) / 건축 기술,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 서비스업(M721) /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(M729) / 전문 디자인업(M732) / 그 외 기타 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(M739)

□ 공공연구기관 조건:「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제2조제5호에 따름

가. 국립연구기관
나. 정부출연연구기관(특정연구기관 육성법,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적용기관)
다.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과 관련된 법인(대통령령)
1.「고등교육법」제2조에 따른 학교(산학협력단 포함)
 * 동 조건에 포함되는 공공연구기관의 소재지는 종된 분단도 포함
2.「국방과학연구소법」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
3.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」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
4. 국가, 지방자치단체,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5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 사업에 드는 연간 비용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받거나 보조받는 법인
5.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학문 또는 과학기술의 연구·조사·개발·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
6.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」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둔 공공기관
7.「보건의료기술 진흥법」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중심병원으로 인증받은 병원
8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법인으로서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
* 동 조건에 포함되는 공공연구기관의 부설연구소(분원)도 포함